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김◇◇ (주민등록번호)

- 2. 이◇◇ (주민등록번호)
- 3. 이◈◈ (주민등록번호)

위 피고들 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(우편번호 000-000)

위 피고 2, 3은 미성년자이므로

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◇◇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 180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80㎡ 인도하라.
- 2. 피고들은 연대하여 20 O O O O O . O . 부터 위 명도일까지 매월 금 300,000원을 지급하라
- 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4. 위 제1,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

청 구 원 인



- 1. 원고는 199○. ○. ○. 망 이◆◆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주택 180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80㎡를 임차보증금 20,000,000원, 월세 금 300,000원(매월 1일 지급),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부터 24개월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, 199○. ○. ○. 임차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망이◆◆에게 인도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○. 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망 이◆◆에게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이 우편은 20○○. ○. 아 망 이◆◆에게 도달하였습니다. 그 후 망 이◆◆는 교통사고로 20○○. ○. 사망하였고, 상속인인 처 피고 김◇◇ 및 아들인 피고 이◇◇, 피고 이◈◈가 망 이◆◆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및 월세지급의무를 그들의 상속지분별로 상속하였습니다. 그러나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○○. ○. ○.에 원고에게 별지도면 표시 주택 80㎡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별지도면 표시 주택 80㎡를 점유하면서 사용하고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근거로 별지도면 표시 선내 (가)부분 80㎡의 인도를 구하고, 아울러 법률상 원인 없는 점유를 이유로 한 20〇〇. 〇. 〇.부터 인도일까지 월세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3호증 통고서

1 .갑 제4호증 건축물대장

1. 갑 제5호증 기본증명서(망 이◆◆)

1. 갑 제6호증 가족관계증명서(망 이◆◆)

첨 부 서 류

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토지대장등본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부동산의 표시

00시 00구 00동 00
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 주택

1층 200 m²

2층 180㎡. 끝.



도 면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2층주택 중 2층 평면도

1		6	5
	(가) 80 m²		
2		3	_ 4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 소멸시효일람표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		
불복절차 및 기 간					
기 타	기 타 망인이 2007. 12. 31.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호적부의 제적등본,로 망인의 사망을 소명할 수 있음		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- 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- 2.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: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(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). 따라서

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